

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 : 2018년 1월 ~ 12월(12개월)
- 근무시간
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1월~11월 주 40시간, 12월 주 37.5시간
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1월~11월 주 20시간, 12월 주 19시간
- 근무내용: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
- 근무지: 읍·면사무소 및 민간위탁수행기관(읍·면사무소 우선 배치)
- 보수
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1월~11월 1,574,000원,
12월 1,476,00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1월~11월 787,000원,
12월 746,000원(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)
- *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. 모집분야 및 일정

- 모집인원 : 18명
 - 일반형일자리(전일제): 14명
 - 일반형일자리(시간제): 4명
- 모집 및 접수기간 : 2017. 12. 1. ~ 12. 12.
- 면접일정 : 2017. 12. 19.
 - * 자격조건 불충분 또는 작성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통지(개별 통지)
 - * 면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- 접수방법: 방문신청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(주소와 전화번호 명기)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- 신청자격: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
- 선발방법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-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(단,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(근로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)
-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(단,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)
 - 소득이 없는 사업자: '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' 제출
 - 연소득이 5,064,000원 이하인 사업자: '소득금액 증명원' 제출
-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-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(계약서 기준)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
-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(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)
-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
-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4. 제출서류(①~④ 공통, ⑤~⑧ 해당자에 한함) 및 접수처

※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

- ① (공통)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자필서명 필수) 1부.
- ②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(자필서명 필수) 1부.
- ③ (공통)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·뒷면) 1부.

※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

- ④ (공통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
※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(자필서명 필수)

- ⑤ (해당자에 한함)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.

※ 2016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,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
- ⑥ (해당자에 한함) 소득금액 증명원 1부.

※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6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

- ⑦ (해당자에 한함)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.

- ⑧ (해당자에 한함) 여성가장일 경우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무(無)	가족관계등록부	
배우자 유(有)	가출·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인등록증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
	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
	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
5. 기타 참고사항

-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.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-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- 24세 이하(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25세 이하(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생인 수급(권)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-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 적용

-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

*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·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

*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
①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-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.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‘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’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. (노동부 차별개선과-2304)

- ‘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’ 서식은 영동군청홈페이지(고시공고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
 -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 -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(TEL.043-740-357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2월 1일

영동군수

